

<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전국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 및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지역 사무소 및 여야 주요 당사 앞 1인 시위 진행 >

1)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전국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

- 일시 : 6월 1일(수) 오전 11시
- 장소 : 여야 주요 당사 앞
- * 경기 지역 : 경기도 한나라당 당사 앞

2)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전국 1인 시위 진행

- 일시 : 6월 1일(수)~6월 10일(금)
- 장소 : 여야 주요 당사 앞
- 시간 : 점심 시간 /
- : 퇴근 시간 /

- 방법

: 1인 시위 시작 시점에 맞춰 중앙 및 지부가 동시에 보도 자료 배포

: 1인 시위는 점심·퇴근 시간에 배치하여 지역별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(점심시간은 반드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시간대는 지역별 조건을 고려해 조정)

각 지부별 1인 시위 담당지역 제안

	1인 시위 대상
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	한나라당사
대전	자유선진당사
전북	민주당사
광주	
전남	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			6/1 기자회견	2	3	4
5		7	8	9	10	

* 1인 시위 시간 :

* 1인 시위 참여 조직

- 경기 남부권 : 시흥, 광명, 안산, 성남, (부천), 기타 희망지역 / 점심 시간
- 경기 장차연 단위 : 수원 세움 야학, 세움 자립센터, 오산 센터 등 / 퇴근 시간
- 경기 장보협 교사 조직 : 확인 필요.

2. 활동보조 추가시간 포기 강요 피해사례 수집요청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비를 지원받고 계신 분 중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추가시간 포기를 요구받은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.

○ 복지부는 작년 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 중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강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자활근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생계비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.

○ 조사내용	
구 분	확인 사항
미취학자녀 양육	1.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종일 양육을 하고 있다 2.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. 3. 보육료(유아학비, 양육수당 포함)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.
가구원 간병·보호	1. 간병·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. ①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. ②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. ③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. ④ 치매,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. ⑤ 질병·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. 2. 간병·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. 3. 월평균 20일,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(돌봄서비스, 요양보호 등 포함)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. ※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○ 치매,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제외

2011년 자활사업안내 중 (복지부)

○ 특히 위 조사내용 중 밑줄 친 3번 조항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매월 80시간 이상 받고 있는 가구는 의무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장애아동의 경우, 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보조를 60시간 받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20시간이상 추가시간을 받고 있으면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. 이에 대전시의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부모들에게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포기하거나 자활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음이 밝혀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은 활동보조추가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활동보조추가시간이나 자활근로를 모두 거부한 경우는 생계비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

○ 위 조항에는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로 미루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전반적인 기초가 수급자를 줄이거나 자활근로참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

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이에 위 조항으로 인해 활동보조추가시간을 포기했거나 (요구받고 있거나) 생계비지급이 중단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제안 드립니다.

○ 부모회 회원 중 수급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활후견기관과 연계가 가능하면 (자활근로의 담당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므로) 이 곳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